

기초교양 대학원생 강의조교 [학문의 세계 작은스승] 복무협약서

제1조(목적) 대학(원)장 이준호(이하 “갑”)과(와) 대학원생 강의조교 **홍길동**(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복무기간 및 복무시간 등)

1. 복무기간 :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 복무내용

- 학부 수강생 글쓰기 과제물(보고서, 서평 등) 지도 / 연구프로젝트, 심층읽기, 토론 등 지도
- 강의준비, e-TL 및 출결관리, 시험감독, 채점 보조 등 강의보조

3. 복무시간 : **주 10시간**

※ “을”의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1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제출시 삭제)**

4. 복무일/휴일 : **매주 5일**

※ 강의 보조 또는 수행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혹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복무일/휴일 및 복무시간을 별도로 지정 **(제출시 삭제)**

제3조(금전적 보상)

- 지급금액 : 등록금 10%면제(장학금) 및 학기 당 360만원(인건비)

※ 등록금 10%면제는 재학생만 해당(연구생 및 규정학기초과자는 인건비만 지급)

- 지급월 : <1학기> 4월, 7월 / <2학기> 10월, 1월

- 지급방법 : “을” 명의 계좌 입금

※ 학기 중 교체할 경우 인건비는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지급함

제4조(안전·보건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인권·권리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을”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위반시 처벌·제재)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갑”은 인권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7조(협약 중단·해지) “을”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복무협약서 교부) “갑”은 복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복무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갑”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교부하며, 교과목 담당 교수는 협약 내용에 따라 “을”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019. 9.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 소속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직 위 : 자연과학 대학장
성 명 : 이준호 (서명)

(강의조교(작은스승)) 소속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학과: 수리과학부)
학 번 : 2019-00000
성 명 : 홍길동 (서명)

교과목 담당 교수 :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기초교양 대학원생 강의조교

[B형, 학문의 기초 작은스승] 복무협약서

제1조(목적) 대학(원)장 이준호(이하 “갑”)과(와) 대학원생 강의조교 **홍길동**(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복무기간 및 복무시간 등)

1. 복무기간 :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 복무내용 (**※ 택 1 의 추가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관련없는 문구 삭제**)
 - 실험·실습·연습 지도 및 실험보고서 작성 지도 및 피드백 제공 등(실험실습 작은스승)
 - 강의준비, e-TL 및 출결관리, 시험감독, 채점 보조 등 강의보조(B형)
3. 복무시간 : **주 10시간**
 - ※ “을”의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1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제출시 삭제**)
4. 복무일/휴일 : **매주 5일**
 - ※ 강의 보조 또는 수행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혹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복무일/휴일 및 복무시간을 별도로 지정 (**제출시 삭제**)

제3조(금전적 보상)

- 지급금액 : 학기 당 180만원(인건비)
- 지급월 : <1학기> 4월, 7월 / <2학기> 10월, 1월
- 지급방법 : “을” 명의 계좌 입금
 - ※ 학기 중 교체할 경우 인건비는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지급함

제4조(안전·보건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인권·권리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을”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위반시 처벌·제재)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갑”은 인권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7조(협약 중단·해지) “을”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복무협약서 교부) “갑”은 복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복무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갑”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교부하며, 교과목 담당 교수는 협약 내용에 따라 “을”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019. 9.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 소속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직 위 : 자연과학 대학장
성 명 : 이준호 (서명)

(강의조교(작은스승)) 소속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학과: 수리과학부)
학 번 : 2019-00000
성 명 : 홍길동 (서명)

교과목 담당 교수 :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